탄 원 서

사건번호	2026 고합 568
사건명	내란부화수행
피고인	전하규
탄원 취지	형사책임의 개별적·엄격한 심리 및 무죄 선고 요청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전하규 피고인의 사건을 공개된 보도를 통해 접한 한 시민으로서,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저는 당시 국방부 내부의 업무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며, 피고인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중대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미 밝혀진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의 형사책임만큼은 직책이나 소속, 당시의 혼란한 정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알고 행한 일에 근거하여 가려져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1. 포고령 공지 사실과 피고인 개인의 형사책임을 구별해 주십시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은 2024 년 12 월 3 일 비상계엄 당시 피고인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라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 등에 문자로 전달하고 그 공표 과정에도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포고령의 내용 또한 공표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으며,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군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주장을 시민인 제가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고령을 문자로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행위와 그 행위가 형법 제 87 조 제 3 호의 내란부화수행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평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고령 전달 자체가 확인되더라도 피고인이 그 시점에 무엇을 인식했는지, 어떠한 의사로 관여했는지, 그 관여가 폭동에 대한 부화수행 또는 관여로 평가될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공보업무의 범위와 실제 행위·권한을 세밀하게 심리해 주십시오

국방부 대변인의 업무에는 지휘·결정권자가 정한 내용을 언론에 공지하는 행정적·실무적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보업무라는 외형만으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 또한 그 자체로 면책의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조직 내 실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목적에 동조하였다고 곧바로 추단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핵심은 당시 피고인이 행한 구체적 조치의 성격과 그 조치에 수반된 인식 및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문제 삼는 것으로 보도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의 통화에서의 서명 요청,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연락, 공보 관련 인원에 대한 전파 지시, 기자단 문자 발송은 각각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과 공표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를 확인한 행위인지, 문건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수정한 행위인지, 나아가 위법한 목적을 인식하면서 실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연락의 상대방과 내용, 보고·지휘 체계, 실질적 결정권한, 피고인에게 남아 있던 선택 가능성까지 증거에 근거해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3. 당시 인식의 범위와 행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내용을 피고인이 언제 알게 되었는지, 포고령의 전달을 진행하던 당시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병력 투입과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인식하였는지, 그러한 인식이 각각의 연락과 문자 발송보다 앞섰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후에 전체 상황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그 모

든 지식이 당시 피고인에게도 존재했다고 소급하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통화기록, 문자 전송 시각, 문건의 작성·수령 경위, 관계자 진술처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고인이 사건의 모든 세부 내용을 빠짐없이 알아야만 형사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실에 대한 무지는 언제나 곧바로 무죄를 의미하지 않으며, 범죄 성립에 필요한 인식과 관여의 정도는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서 곧장 전체 내란행위의 목적을 인식하고 이에 동조하였다는 결론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사이를 연결하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첫 공판에서 제기된 의문을 충실한 증거 심리로 해소해 주십시오

2026 년 10 월 19 일 첫 공판에 관한 공개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지시 상대방의 표현과 대통령실 관계자 연락의 시점,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을 뒷받침하는 근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이 곧바로 배척되었다는 뜻도, 피고인의 무죄가 이미 확인되었다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행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으며 그때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히는 일이 이 사건 심리에서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검 측에는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피고인 측에는 그 내용과 증명의 충분함을 다툴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기 공보업무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에 대한 처분이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같은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자의 역할, 인식, 행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해서도 오직 그의 책임에 상응하는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5. 무죄추정과 엄격한 증명의 원칙 아래 판단해 주십시오

형법 제 87 조 제 3 호는 내란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는 추측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 27 조 제 4 항의 무죄추정 원칙, 형사소송법 제 307 조 제 2 항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은 사건의 성격이 중대할수록 더욱 충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25 조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한 취지 역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의 형벌권이 한 개인의 명예와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그 사람이 실제로 행한 일과 타인이 행한 일, 당시 알았던 사실과 사후에 알려진 사실, 직무상 전달 행위와 범죄에 대한 의식적인 가담을 정확히 나누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충분하고 공정한 심리를 거친 뒤에도 전하규 피고인의 행위가 내란부화수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제 325 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부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부디 피고인이 맡았던 직책의 무게와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 평가를 잠시 분리하여, 당시의 사실과 증거가 보여 주는 피고인 개인의 책임을 끝까지 살펴 주십시오. 법 앞에서 누구도 부당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누구도 증명되지 않은 책임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재판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존중하며, 오로지 그러한 원칙에 따른 무죄의 판단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_____